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21-17호

「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8월 25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「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예고

1. 제안이유

- 가.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- 나.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발생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복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보완(안 제1조)
- 용어의 정의 추가(안 제2조)
-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3조)
- 지원내용 보완(안 제4조)
-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5조)
- 지원대상자의 범위 보완(안 제7조)
-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 보완(안 제8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8월 30일까지 상주시의회의장(참조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 (안)	수 정 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: juntae0819@korea.kr

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
3) 팩 스: 054-535-9854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 (전화: 054-537-7842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: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자치법규안 내용	의견	비고